

대학원 운영 규정

제정 1996. 9. 5	1차 개정 1999. 3. 9	2차 개정 1999. 7. 11	3차 개정 2000. 7. 18
4차 개정 2001. 1. 17	5차 개정 2002. 8. 26	6차 개정 2004. 3. 15	7차 개정 2005. 5. 23
8차 개정 2007. 2. 26	9차 개정 2007. 5. 3	10차 개정 2008. 8. 29	11차 개정 2010. 3. 29
12차 개정 2010. 11. 15	13차 개정 2011. 9. 19	14차 개정 2012. 6. 18	15차 개정 2012. 10. 29
16차 개정 2013. 8. 26	17차 개정 2013. 10. 28	18차 개정 2014. 9. 29	19차 개정 2015. 10. 26
20차 개정 2015. 12. 21	21차 개정 2016. 3. 28	22차 개정 2016. 6. 27	23차 개정 2019. 4. 1
24차 개정 2020. 2. 25	25차 개정 2020. 6. 22	26차 개정 2020. 9. 28	27차 개정 2021. 12. 20
28차 개정 2023. 2. 28	29차 개정 2023. 8. 7	30차 개정 2023. 9. 25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학원위원회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학장, 부학장(대학원주임), 전임 학장, 전임 부학장(또는 전임 학과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임기)

-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잔여임기 동안 선임된 위원이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하며 심의한다.

1.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3. 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논문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6조(회의)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대학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제7조 (교육목적 및 교육 목표)

- ① 교육목적은 전남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 창조, 봉사를 바탕으로 간호 지식을 창의적으로 개발 적용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책임감, 자율성, 협동성을 가진 간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
- ②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학문적 연결·융합을 통해 간호지식의 확장과 전문화를 추구한다.
 2. 혁신과 협업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간호의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실천한다.
 3. 공감과 성장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조화에 기여한다.

제4장 입학전형

제8조 (입학자격)

- ①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을 통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제9조 (입학정원) 입학정원은 대학원에서 정하는 정원 내에 한한다.

제10조 (입학시험) 입학시험은 구두시험으로 시험문제는 면접전형일에 출제한다.

제5장 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제11조 (지도교수 선정) 지도교수는 각 과정의 학생이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 선정한다. 학생

의 전공 및 관심 영역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후 교수회의에서 결의한다. 단, 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지도학생 정원) 지도 교수 1인당 각 학위과정의 학년 별 지도학생 수는 석사과정 5인, 박사과정 3인 이내로 한다(휴학생은 제외).

제13조(지도교수 변경)

- ① 지도교수의 정년퇴임, 면직하였을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② 6개월 이상의 병가, 휴직 혹은 연구년 등인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지도교수의 세부전공분야와 학생이 작성하고자 하는 논문주제가 상이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지도교수 변경은 학생이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위원회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가결한 경우는 교수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교수회의에서 가결된 경우 기존 지도교수의 지도를 중지시키고 대학원주임은 다른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제6장 교육과정 운영

제14조 (수강과목)

- ① 석박사과정의 수강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과목은 공통필수와 전공 선택으로 나눈다.
 2. 공통필수, 전공선택 과목은 간호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정한다[별표 1].
 3. 자유선택과목은 학점 교류대상 학교의 본 학위과정 수준과 동일한 과정의 교과목을 학생이 자유로 선택 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 혹은 대학원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정 이수)

- ① 학위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 54학점 이상이다.
- ② 간호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석사과정 학생은 18학점 이상, 박사과정 학생은 27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3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③ 우리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에 진학한 자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7조 5항에 따라 12학점 이내, B이상의 교과목을 초과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우리학과 전문간호사 석사학위 취득자는 6학점 이내, B이상의 교과목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초과학점인정 관련)
- ④ 학생은 한 학기에 9학점(3개 교과목) 이내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일제 학

생은 전학기 수강과목 성적이 모두 A^o이상이고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3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다.

제16조 (보충학점이수)

- ① 석사과정 입학자 중 간호학과 이외 타학과 졸업생의 보충학점 이수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박사과정 입학자중 간호학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유사계통 지원자(비동일계학과출신, 전문/특수대학원 출신)는 우리학과 석사과정의 과목 중 공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15학점 이내에서 B(80점)이상의 성적을 3학기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 ③ 박사과정 입학자중 전문간호사 석사과정 이수자는 우리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공통필수과목 중 미이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④ 대학원생의 보충과목 선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고,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7조 (학생이 각 교수 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

해당 학위과정내에서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12학점 이내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논문작성

제18조 (논문제출자격을 위한 시험)

- ① 시험 과목은 외국어와 전공과목으로 한다.
 - 외국어: 석.박사 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종합시험: 석사과정 18학점 이상(보건통계학 포함), 박사과정 27학점 이상(석.박사 통합과정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응시할 수 있다.
- ② 전공과목 종합시험은 석사과정 2개 분야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3개 분야 이상으로 하며,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별표 2].
- ③ 전공시험 합격결정은 각 분야당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성적이 70점 이상, 분야별 성적이 50점 이상 되었을 때 합격으로 처리한다. 평균성적은 70점 이상인 자가 과락이 있어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과락분야만 재응시 할 수 있다.
- ④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의 면제기준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지침 규정 제2조에 따른다(2024년도 상반기 외국어·종합시험 신청자부터 적용).

제19조 (논문작성계획서 심사)

- ① 석사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 18학점을 이수한 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대학원 간호학과에 제출할 수 있다.

2. 학위수여예정자는 대학원 주임에게 심사위원 3인의 수락동의서, 심사결과보고서 및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위논문제출자격을 얻는다.
3.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이 중 2인은 본 학과 교수이어야 함)으로 구성한다.

②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 27학점을 이수하고 제1저자인 예비논문(논문게재 예정증명서 인정)이 있는 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대학원 간호학과에 제출할 수 있다. 예비논문은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이어야 한다(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석사학위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 시 예비논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단, 제1저자로 석사학위 논문을 SCI/ SSCI/SCIE 학술지에 게재 시 인정), 2009~2011년도 입학자는 공동논문도 인정한다.
2. 석박사통합과정은 45학점을 이수하고 제1저자인 예비논문 2편(논문게재 예정증명서 인정)이 있는 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대학원 간호학과에 제출할 수 있다. 단, 예비논문 가운데 1편은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이어야 하며, SCI(E), SSCI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은 학진등재(후보)지 2편으로 인정한다.
3. 학위수여예정자는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심사위원 5인의 수락동의서(4인 이상 찬성), 심사결과보고서(1심) 및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위논문제출자격을 얻는다.
4.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이 중 3인은 본 학과 교수이어야 함)으로 구성한다.
5. 학위수여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공개발표 해야 하고, 공개발표 후 1달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2심)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청구 논문 심사)

- ① 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이상, 박사과정은 3회 이상 심사하며 반드시 대학원 간호학과에서 주관하는 공개발표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청구논문발표는 심사로 간주한다.
- ② 공개 발표회에는 논문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심사위원은 사유서를 대학원 간호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논문작성계획서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위원이 된다.
- ④ 심사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동의로 결정된다.
- ⑤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교육이수증 및 IRB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최종 학위논문제출 시 Turnitin 표절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우수논문심사 및 포상제도)

우수논문 심사 및 포상은 대학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발하고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별표 3].

제22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은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별표3].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에 교수회의를 거쳐 선발기

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 (행정사항)

대학원 간호학과 학사업무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행정 직원을 둔다.

제9장 보칙

제23조 (시행세칙) 이 규정 외의 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을 따른다.

제24조 (인준 및 기록 보존)

- ① 본 규정의 회의 의결사항의 최종확정은 교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한다.

부칙(1996. 9.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3.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8.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3.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5.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 25)

[별표 1]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일반대학원 교육과정

	석 사	박 사
공통필수	간호이론 간호연구 보건통계학	간호과학 간호이론개발 양적연구 1 질적연구 양적연구 2 간호연구세미나+
전공선택	간호철학 건강관련이론 간호개념개발 만성질환자간호 트라우마와건강간호 노인건강문제세미나 상급건강사정 실습교수개발 간호전문직론 임상의사결정과정 간호교육방법론 간호와테크놀로지 경험기반간호서비스디자인 사회적불평등과건강형평성 생리학적측정및평가 고급성인간호학및실습 고급여성건강간호학및실습 고급아동간호학및실습	고급보건통계학 측정도구의개발및평가 간호정책과정 임상간호정보세미나 생명윤리와간호특론 가족간호및가족치료 인간행동론 간호연구분석 간호조직관리 간호중재개발 스트레스증상관리세미나 임상생리학 근거중심간호방법론 간호리더십개발 질적연구세미나 고급간호행정및실습 고급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고급지역사회정신간호학및실습
자유선택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6학점까지 취득가능	

※ 석·박사 과정 총이수학점 : 60학점(석사과정 : 24학점, 박사과정 : 36학점)

+ 간호연구세미나는 박사과정 내 공통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수강함

[별표 2]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일반대학원 종합시험

1) 201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안

	석 사	박 사
분야	과 목	과 목
1분야	2과목 : 과목당 100점 - 간호이론 - 간호연구+보건통계학 * 연구방법과 통계과목을 별도 과목으로 시험보지 않고 연구상황에 연구방법과 통계문제를 통합해서 출제하기로 함	이론분야(2과목) : 과목당 100점 - 간호과학 - 간호이론개발
2분야	- 선택과목 : 2과목(과목당 50점)	연구분야(1과목) : 과목당 100점 - 간호연구설계 및 측정
3분야		선택과목 : 2과목(과목당 50점)
계	4과목 (300점, 2분야)	5과목 (400점, 3분야)

2)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안

	석 사	박 사 / 석박사통합
분야	과 목	과 목
1분야	간호이론 (100점)	간호과학 (100점)
2분야	간호연구 (보건통계학 포함) (100점)	간호이론개발 (100점)
3분야		양적연구 (100점)
4분야		질적연구 (100점)
계	2과목 (200점, 2분야)	4과목 (400점, 4분야)

[별표 3] 대학원 포상 및 장학생 선발

선발 기준
3-1. 포상기준
1) 총장(성적우수)상: 박사과정 성적우수자
2) 시그마학회장상: 석사과정 성적우수자
3-2. 장학생 선발기준
1)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자 우선선발
2) Full Time 학생, 학과발전에 기여한 자,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등록예정 학생수 기준으로 과정별 인원 배정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자 별도 배정)
4)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장학금: 수업료 I 이상)는 후순위로 배정
5) 직전학기 평균평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등록횟수 순으로 반영
6) 동점자의 경우 전체 평균평점 반영